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8. 12. 15.
행정소방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1월 13일
충청북도지사

2. 회 부 일 자 : 2008년 11월 14일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76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(2008. 12. 8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)

Ⅱ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관리실장 연영석)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채상환기금은 채무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되었으나 적립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안정적 적립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채무상환비율이 10%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(안 제2조 제2항)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소방전문위원 윤영창)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적립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안정적 적립을 도모하고 조례의 체계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법령의 내용은 그 법령을 적용받는 대상에게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함.

그러나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은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함에 있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본 조문은 채무가 없을 때에도 적립을 해야 하는지 또한 “일정액”이라고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.

따라서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기준을 채무상환비율이 10%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기준을 명확히하여 기금의 안정적 적립을 도모하고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타당하다고 보았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Ⅴ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Ⅶ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Ⅸ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“를 삭제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기금”을 “지방채무상환기금(이하 ”기금“이라 한다)로 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채무상환비 비율이 10%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"를 삭제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기금"을 "지방채무상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로 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채무상환비 비율이 10%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7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지방채무상환기금을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~ 3. (생략) ②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출연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.	제2조(기금의 조성) ①지방채무상환기금(이하"기금"이라 한다)은 -----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채무상환비비율이 10%이상 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(생략) ②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	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제7조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·보고) ①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. ~ 3. (생략) ③(생략)	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·보고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에 따른 ---------- ---------- -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
관 련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재정법

제52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·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
2.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

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제1항에서 "재산"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채발행 한도액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

【행정안전부 예규 제44호('08.3.11)】

<지방채무관리 및 운용>

3. 감채기금의 적립단체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비율 기준

○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사업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함.

○ 전항에 의해 매년 발생하는 당해예산의 순세계잉여금중 감채기금에 적립하거나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하여야 할 비율은 다음과 같음

- 1 유형중 다음 자치단체 :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

· 향후 채무상환원리금이 일정년도(3-5년)에 집중되어 당해연도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

·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수개년간 지방채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원확보에 부담이 되는 단체

· 차입자금이 단기·고금리에 치중되어 원리금상환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

- 2 유형 : 순세계잉여금의 20%이상
- 3 유형 : 순세계잉여금의 30%이상
- 4 유형 : 순세계잉여금의 50%이상

참 고 자 료

2008. 6월말 현재 채무현황

□ 채무현황

○ 채 무 액 : **21건, 1,724억원** (일반회계 1,724)

※ 2007년말 1,777억원 대비 53억원(2.98%) 감소

○ 채무비율 : 예산대비 6.81% (1인당 채무 : 113,928원)

○ 채무상환비율 : 3.07%, 실질수지비율 : 10.24%

○ 사업별 채무현황

(단위 : 억원)

도로건설	재해재난	중소기업지원	청사정비	기타
620	661	25	65	353

○ 채무상환계획

(단위 : 억원)

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이후
51	111	113	147	1,302

□ 연도별 채무현황

(단위 : 억원)

연 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.6월말
채무잔액	818	1,277	1,467	1,777	1,724
발 행 액	12	552	286	460	20

< 용어해설 >

· 채무상환비비율 = $\frac{\text{최근4년간(평균) 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}}{\text{최근4년간(평균) 일반재원수입액}} \times 100$

※ 일반재원 : 지방세 , 보통교부세, 경상적세외수입, 재정보전금

본청 사업별 현황

(2008. 6. 30현재)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차입년도	사업명	자금선	차입원금	채무잔액	차입조건
본청		21건		199,882	172,352	
	'04	지방도 확·포장 차환	지개기금	12,000	6,000	3.5%,(-) 6년
	'06	지방도 정비사업	지개기금	23,000	23,000	3.5%,(5)10년
	'07	지방도 정비사업	지개기금	33,000	33,000	3.5%,(5)10년
	'04	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 차환	지개기금	3,600	2,520	3.5%,(-)10년
	'02	청주 서부소방서 신축	청사정비	1,200	480	3.0%,(2)11년
	'04	청주 동부소방서 신축	청사정비	1,200	840	3.0%,(2)11년
	'04	진천 소방서 신축	청사정비	1,200	840	3.0%,(2)11년
	'06	보은파출소 신축	청사정비	300	270	3.5%,(2)10년
	'06	오창파출소 신축	청사정비	300	300	3.0%,(2)10년
	'07	영동소방서 신축	청사정비	1,700	1,700	3.0%,(2)10년
	'08	부용안전센터 신축	청사정비	300	300	3.0%,(2)10년
	'08	충주소방서 신축	청사정비	1,700	1,700	3.0%,(2)10년
	'04	96 수해복구사업 차환	지개기금	4,900	2,800	3.5%,(-) 9년
	'04	98 수해복구사업 차환	지개기금	18,000	12,000	3.5%,(-) 9년
	'04	02 수해복구사업 차환	지개기금	27,199	16,319	3.5%,(2)5년
	'05	04 수해복구사업	지개기금	35,000	35,000	3.5%,(5)10년
	'05	오창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(1차)	지개기금	8,000	8,000	3.5%,(5)10년
	'05	오창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(2차)	지개기금	11,000	11,000	3.5%,(5)10년
	'07	오송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	지개기금	11,283	11,283	3.5%,(5)10년
	'06	오송 컨벤션센터 건립	지개기금	5,000	5,000	3.5%,(5)10년